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병역기피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원 5명(6급 5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 둘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7급 3명, 8급 5명에서 6급 1명, 7급 7명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별표 6의2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7급 3명, 8급 5명)”을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으로 한다.

제8장(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1,489”를 “1,497”로 하고, 일반직 계 “1,489”를 “1,497”로 하며, 행정주사보 “270”을 “276”으로, 의료기술주사보 “44”를 “46”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1,490”을 “1,497”로 하고, 일반직 계 “1,490”을 “1,497”로 하며, 행정주사보 “281”을 “287”로, “의료기술주사보 “44”를 “46”으로, 행정서기보 “244”을 “243”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국방부령 제1031호, 제1095호, 제11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제1095호, 제11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국방부령 제10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14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4월 1일 이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95호, 제11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국방부령 제11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1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11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일 이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 본문, 제8장(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③ (생략)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u>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④ ----- -----정원----- ----- ----- ----- ----- ----- ----- ----- ----- ----- ----- <u>별표 6의2와 같다.</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 -----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7급 3명 8급 5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	⑥ ----- -----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 -----

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생략)

제8장 한시정원

제48조(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사 중 중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제1095호, 제11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제1095호, 제11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② (생략)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
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
명, 행정서기 2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
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
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제10
95호, 제1151호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
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
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② (현 행
과 같음)

③ -----

-----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
일 이후 -----

-----.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제10
95호, 제1151호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2026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
7년 1월 1일 이후 -----

국방부령 제10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14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 주사 5명은 <u>2026년 3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2026년 4월 1일 이후에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 의2의 행정주사보 5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는 ----- -----.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국방부령 제1095호, 제11 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 된 내용을 포함한다)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국방부령 제1095호, 제11 5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 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 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 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 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2 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7 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 명, 행정주사보 1명)은 <u>2026년 8</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 ----- ----- ----- <u>2026년 12</u>

<u>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u>	<u>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u> ----- -----.
국방부령 제11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1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국방부령 제11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1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1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삭 제></u>
국방부령 제11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방부령 제11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89</u>	<u>1,497</u>	+8
일반직 계	<u>1,489</u>	<u>1,497</u>	+8
.	.	.	
.	.	.	
행정주사보	<u>270</u>	<u>276</u>	+6
.	.	.	
.	.	.	
의료기술주사보	<u>44</u>	<u>46</u>	+2
.	.	.	
.	.	.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0</u>	<u>1,497</u>	+7
일반직 계	<u>1,490</u>	<u>1,497</u>	+7
•	•	•	
•	•	•	
행정주사보	<u>281</u>	<u>287</u>	+6
•	•	•	
•	•	•	
의료기술주사보	<u>44</u>	<u>46</u>	+2
•	•	•	
•	•	•	
행정서기보	<u>244</u>	<u>243</u>	-1
•	•	•	
•	•	•	